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6월 24일, 소병훈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9. 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소병훈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된 상황에서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은 「청소년 기본

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형사사법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이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근거 기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 2015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46건, 총 1,602건이 시행되었음.

청소년 심리부검의 경우 과거 교육부 주관으로 시범 실시 후 중단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함께 매뉴얼을 공동 작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록물 분석 및 유족 면담 도구를 개발하여 2026년 9월부터 시범 시행 후 2027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개정안은 수행기관의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가 보다 용이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심리부검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년 심리부검을 위하여 요청되는 자료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적

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자료 요청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제11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자살자 관련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안 제25조제1항제1호)하고 있는데, 심리부검 자료는 사망장소, 자살 방법, 정신질환 치료력, 가정 문제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형사사법정보와 대등한 수준의 비밀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형사사법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중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